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417호

「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

'22년 1월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(1.25% → 3.00%) 및 이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,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금리를 인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약저축 이자율 인상(안 제2조제3호)

-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1.0%에서 1.3%로 인상
-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1.5%에서 1.8%로 인상
-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1.8%에서 2.1%로 인상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주택기금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
- 팩 스 : 044-201-553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(전화 044-201-3344, 33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